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공동폭행)·업무상 횡령·업무상 배임·업무방해·폭행



[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8. 2011고단2986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임예진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강창웅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, 피고인 2를 벌금 400만 원에,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, 피고인 4를 벌금 200만 원에, 피고인 5를 벌금 300만 원에, 피고인 6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, 2, 4, 5,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3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 1, 2, 4, 5, 6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